

예산총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5,292,483	8,558,774
일반회계	263,391,772	7,901,753
특별회계	21,900,711	657,021
기타특별회계	21,900,711	657,02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1,653	23,150
주택사업특별회계	544,707	16,34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012,362	30,3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56,126	31,68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54,557	13,637
주차장특별회계	422,543	12,676
수질개선특별회계	17,247,663	517,4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91,100	11,73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54,37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다.